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성
1	미래에셋 KorChindia 포커스 7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○	○
2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
3	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4)	○	○
4	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4), 5)	○	○
5	미래에셋달로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4), 5)	○	○
6	미래에셋달로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)	4), 5)	○	○
7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4), 5), 6)	○	○
8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4)	○	○
9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10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 혼합)	4)	○	○
11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○	○
12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 혼합)	4)	○	○
13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○	○
14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 혼합)	4)	○	○
15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16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 혼합)	4)	○	○
17	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709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4)	○	○
18	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(재간접형)	1), 4)	-	-
19	미래에셋베트남&차이나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○	○
20	미래에셋변액보험차이나증권투자신탁(주식)	4), 6)	-	-
21	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투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4)	-	-
22	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	4)	-	-
23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○	○
24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25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-	○
26	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27	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 K-1 호(주식)	4), 6)	-	-
28	미래에셋중국위안화우량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4), 6)	-	-
29	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1.5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4), 6)	-	-
30	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6)	○	○

31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-	○
32	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4), 5), 6)	○	○
33	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, 6)	-	-
34	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-	-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6)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4월 15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「」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 나. 과세 (4)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모부동산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	-가입기간 <u>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</u>	-가입기간 <u>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</u>

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KorChindia 포커스 7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25	17.44
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4	4	-	6.39
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3.56	3.57
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-재간접형)	4	4	9.75	9.64
미래에셋달로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4	5	-	3.41
미래에셋달로우량중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(UH)(채권)	4	4	-	8.54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2	1	24.26	44.99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2	22.55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2	22.55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4.39	14.85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4.39	14.88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1.42	11.82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1.44	11.85
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31	6.61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6.35	6.64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	5	4.5	4.78
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709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2.44	2.77
미래에셋베트남&차이나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9.56	17.61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6.69	15.88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6.26	15.67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7.25	17.17
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0.37	21.49
미래에셋차이나 H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1	21.2	25.78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2.71	21.79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2 호(주식)	2	2	22.67	21.08
미래에셋평생소득 TIF 혼합자산투자신탁	4	4	6.26	6.32

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 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 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 종시가)</p>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 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6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 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 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 <중략> <u>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</u> <u>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<u>또는</u> <생략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